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무역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

The Needs to Reform the Trade Insurance System to Protect SMEs

오 정 현*

Junghyun Oh

중소기업 자금조달시 종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서가 담보로 이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보증서 담보 대출시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앞 요구하던 연대입보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대출 및 보증시 개인 연대입보를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무역보험공사의 부분 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적 연대입보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은 실질적으로 신·기보 보증서와 같이 채권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무보도 공공기관이라는 점, 중소기업 금융 보호라는 정부 정책은 발급 기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보의 부분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연대입보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중소기업 대출시 무보 보험·보증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보 약관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이행 청구 및 회수금의 대출금 총당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문 색인어: 부분보증, 연대입보 면제, 무역보험, 부당한 담보 요구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130320

*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국제법무2팀 팀장, 변호사(jung_hyun7@kdb.co.kr), 단독저자
논문 투고일: 2026.03.11, 논문 최종 수정일: 2026.04.13, 논문 게재 확정일: 2026.05.15

I. 서론

중소기업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보증서는 통상 “부분보증”으로 채무자 기업이 받는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한다. 대출 금융기관은 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용보강을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 당해 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부터 개인 연대입보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회사를 창업하거나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의지를 억제하고 사업 실패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대보증을 축소 내지 면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그런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이러한 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금융 보호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개선 대책을 살펴본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가 기업 규모별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수출기업의 신용리스크 성과 측정,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등 주로 실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글에서는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신·기보와 무보 보증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¹⁾

1) 라공우(2013. 3), “무역보험제도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15-1), 한국통상정보학회, 261~262면.

II. 신용보증제도와 부분보증

1.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정부 출연이나 출자를 재원으로 설립한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공공보증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³⁾ 이중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 특화되어 채무보증을 제공한다.⁴⁾

1) 신보와 기보의 신용보증 업무

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 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용보증기금법; 이하 “신보법” 제1조). 이때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금융회사 등⁵⁾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 등을 보증하는 것을 뜻하는데(신보법 제2조 제1호) 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신보법 제3조 제1항). 기보도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 보증과 상시 고용 종업원이 1천 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 원 이하인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2) 김상환·김흥기(2016.12),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현황과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2-3>」, 한국금융연구원, 55면.

3)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차입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용보증전담기관으로 1976년 설립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989년 설립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다(정형권(2009. 8),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5-2>」, 61면).

4) 김상환·김흥기, 전계문, 55면~56면.

5)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을 말한다(신보법 제2조 제3호).

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⁶⁾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을 보증하는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한다(기보법 제1항 제5호).

2. 부분보증제 도입

1) 신보와 기보의 부분보증

부분보증이란 보증에 따른 신용위험을 대출 은행과 보증서 발급기관이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제도이다.⁷⁾ 신보는 1999년 1월 처음으로 부실보증 축소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15~20%에 해당하는 책임을 분담케 하는 부분보증제를 도입하였다. 1999년 9월부터는 신규 및 증액 보증의 50%까지 분담을 확대하고 2000년부터 신규 보증에 대하여 부분보증제 방식을 전면 도입하였다.⁸⁾ 현재 신보는 부분보증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신보 2024. 4. 11. 개정 업무방법서 제9조 제2항, 대부분 보증비율 85%)⁹⁾ 특례보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00% 전액보증을 제공한다.¹⁰⁾ 신보는 기보도 부분보증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기보 업무방법서 제11조의2 제1항).¹¹⁾ 이에 따라 신규 보증의 보증 비율은 85%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분야 보증, 회생지원 보증 등에 대하여는 보증 비율을 90% 내지 100%까지 운용할 수 있다(기보 2024. 12. 4. 개정 부분보증 운용기준 제5조, 제6조).¹²⁾

6)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을 말한다(기보법 제2조 제1항 제3호).

7) 가령 총대출금액 10억 원에 대하여 85%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은 보증 조건에 따라 대출금의 85%인 8.5억 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은행이 최종적인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8) 한국금융연구원(1996. 6), “금융권 동향: 비은행권: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제 확대 실시”, 「주간금융동향 <8-20>」, 14면.

9) 알리오 공시 신보 업무방법서. Retrieved from alio.go.kr/item/itemOrganList.do?apbald=C0038&reportFormRootNo=21110. 최종방문일 2026. 1. 22.

10) 김상환·김흥기, 전계문, 56면.

11) 알리오 공시 기보 업무방법서. Retrieved from alio.go.kr/item/itemOrganList.do?apbald=C0038&reportFormRootNo=21110. 최종방문일 2026. 1. 22.

12) 알리오 공시 기보 부분보증 운용기준. Retrieved from alio.go.kr/item/itemOrganList.do?apbald=C0038&reportFormRootNo=21110.

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무역보험과 부분 보험·보증 제도

신·기보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라 한다)도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사업을 영위한다. 무보는 무역보험법(이하 “무보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무역보험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무보법 제37조, 제38조), 이때 무역보험이란 수출·수입 기타 해외투자,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 조성 등이 예상되는 대외거래와 관련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무보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무보는 무역보험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역보험과 함께 수출신용보증·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무보법 제53조 제1항).

1) 무보의 무역보험과 신용보증

무역보험 종류는 무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무보법 제3조)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업무방법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무보법 제53조의3). 이러한 무역보험에는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으며(무보 2024. 6. 10.자 개정 업무방법서(“무보 업무방법서”) 제6조)¹³⁾ 비상위험, 신용위험과 영업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을 담보한다. 무보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에 무보가 별도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7조).

무보가 취급하는 신용보증에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지원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수출신용보증)과 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이 있다(무보 업무방법서 제19조).¹⁴⁾

최종방문일 2026. 1. 22.

13) 알리오 공시 무보 업무방법서. Retrieved from alio.go.kr/item/itemOrganList.do?apbald=C0038&reportFormRootNo=21110.

최종방문일 2026. 1. 23.

14) 수입신용보증은 ‘수입보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무역보험공사(2024. 9), 「무역보험제도 안내」, 12~13면).

2) 부분 보험·보증

무보의 무역보험은 대부분 부분보험이다. 가령 단기수출보험은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부보율이 차등 적용되며(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중계무역은 95% 이내, 재판매는 95%를 기준으로 하되 무보의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⁵⁾ 중장기수출보험의 부보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은 95% 이내, 대기업은 90% 이내이다.¹⁶⁾

무보의 신용보증도 부분보증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지원자금 대출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선적 후, 매입, 포괄매입)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무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비율은 90% 이내이다.¹⁷⁾ 신용보증은 무보와 금융기관, 무보와 수출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무보는 수출자의 채권자가 되는 금융기관과 수출신용보증계약 또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며(무보 업무방법서 제20조 제1항), 이때 보증대상채무는 무보가 정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20조 제2항). 이와 함께 무보는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해당 기업인 수출자와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21조). 이때 주채무자인 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보증약정에 자필서명을 하게 된다.¹⁸⁾

15) 무보 홈페이지>사업안내>단기성 보험>단기출보보험(선적후) 참고. Retrieved from ksure.or.kr/rh-kr/cntnts/i-104/web.do. 최종방문일 2026. 1. 23.

16) 무보 홈페이지>사업안내>중장기성 보험>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참고. Retrieved from ksure.or.kr/rh-kr/cntnts/i-104/web.do. 최종방문일 2026. 1. 23.

17) 이때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은 수출물품 제작을 위한 자금 대출을 가능케 하며, 수출신용보증(선적 후)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을, 수출신용보증(매입, 포괄매입)은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한다.

18) 무보 홈페이지>사업안내>신용보증 참고. Retrieved from ksure.or.kr/rh-kr/cntnts/i-104/web.do. 최종방문일 2026. 1. 23.

Ⅲ. 계약 구조와 신용 보강을 위한 연대입보

신·기보의 신용보증과 무보의 무역보험·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 상환 위험을 부분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신·기보의 부분보증은 채무자 기업이 신·기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계약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이 신·기보가 발급하는 보증의 수익자가 된다. 즉, 대출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며 단지 신·기보가 별도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정해진 대로 보증의 수혜를 입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증계약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하여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2450 판결). 반면 무보의 경우에는 단기수출보험과 같이 수출자인 기업이 자신의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무보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상품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상품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하 자세히 살펴본다.

1. 신·기보 신용보증

1) 신보

신보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업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기업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신보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¹⁹⁾ 이후 신보가 채무를 보증한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상 불이행하는 등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신보 앞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게 된다(신보법 제29조 제1항, 신보법 시행령 제21조). 이러한 청구에 따라 채권자 앞 보증채무를 이행한 신보는 구상권을 취득하며 채권자는 신보의 구상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신보법 제30조). 동시에 신보는 대위

19) 신보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면 보증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신보법 제28조 제3항).

변제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양수받는다. 신보법에 따른 신용보증은 구체적으로 신보가 정한 신용보증약관과 개별 약정서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하에서는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약관(이하 “신보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비대면)(이하 “신보 보증약정서”라 한다)를 예로 채권자(금융기관) - 신보(보증인) - 채무자 기업(보증의뢰인)의 법률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²⁰⁾

(1) 채무자 기업과 신보 간 신용보증약정 체결

채무자 기업은 신보 앞 당해 기업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보 앞 신용보증을 부탁한다(신보 보증약정서 제1조). 이후 신보는 채권자 앞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으며(신보 보증약정서 제2조 제1항),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있게 되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를 채무자 기업과 연대보증인(있는 경우) 앞 통지한다(신보 보증약정서 제9조). 이후 신보는 대위권자로서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신보 보증약정서 제17조).

(2)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되고, 신용보증통지일 이후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동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한다(신보 신용보증약관 제7조).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신보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동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채권자는 약관상 정하여진 신용보증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통지기한 내에 이를 신보 앞 통지하고(신보 신용보증약관 제12조 제1항)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다(신보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이후 채권자는 신보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즉시 신보 앞 담보권

20)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중 신용보증약관 및 신용보증약정서 참고. Retrieved from <https://www.kodit.co.kr/kodit/na/ntt/selectNttList.do?mi=2806&bbsId=1002&ps=218>. 최종방문일 2026. 1. 23.

을 이전하고(신보 신용보증약관 제20조), 신보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보 신용보증약관 제22조).

2) 기보

신보와 마찬가지로 기보도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업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기업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보증관계가 성립한다(기보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²¹⁾ 기보가 보증한 기업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3개월 이상 불이행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기보 앞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기보법 제36조 제1항, 기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보는 구상권을 취득하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기보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송부 등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기보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기보의 보증 역시 기보가 정한 보증약관과 개별 약정서에 따라 법률관계가 구체화된다. 이하 기보의 금융회사 대출보증용(전자보증서용) 보증약관(이하 “기보 보증약관”이라 한다)과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이하 “기보 보증약정서”라 한다)를 예로 보증관계 성립에 따른 채권자 - 기보 - 채무자 기업 간 법률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²²⁾

(1) 채무자 기업과 기보 간 보증약정 체결

채무자 기업은 기보 앞 당해 기업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기보 앞 보증을 부탁한다(기보 보증약정서 제1조). 이후 기보는 채권자 앞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기보 보증약정서 제2조 제1항),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으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를 채무자 기업과 연대보증인(있는 경우) 앞 통지하게 된다(기보 보증약정서 제9조). 이후 기보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로부터

21) 기보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면 보증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기보법 제35조 제3항).

22)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소식·자료>서식 자료>약관 및 약정서 중 보증약관 및 보증약정서 참고. Retrieved from kibo.or.kr/main/board/boardType307.do. 최종방문일 2026. 1. 23.

대위권자로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기보 보증약정서 제12조).

(2)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

기보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관계는 채권자가 기보의 전자보증서 송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기보 보증약관 제4조 제1항). 기보는 이러한 보증관계가 성립된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기보 보증약관 제5조 제1항). 채권자는 약관상 정하여진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면 통지기한 내에 이를 기보 앞 통지하고(기보 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다(기보 보증약관 제12조). 이후 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즉시 기보 앞 담보권을 이전하고(기보 보증약관 제18조), 기보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기보 보증약관 제17조 제2항). 이때 기보는 보증서상 정하여진 보증비율에 따른 기보책임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기보 보증약관 제2조 제6호 가목, 제14조).

3) 소결

신·기보 신용보증에 있어 채무자 기업 앞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신용보증 약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나 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다. 대출 금융기관은 보증사고 발생시 신·기보 앞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 받은 후 신·기보 앞 담보권 이전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무보의 무역보험과 신용보증

1) 무역보험

무보의 무역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 사업금융보험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무보 업무방법서 제6조). 이중 단기수출보험²³⁾

23)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수출대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인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

과 같이 수출자인 기업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도 있으나²⁴⁾ 중장기성 수출보험²⁵⁾ 상품 중 구매자신용(중장기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환기간 2년 초과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의 보험계약 당사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된다.²⁶⁾ 해외사업금융보험²⁷⁾과 해외투자보험²⁸⁾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²⁹⁾³⁰⁾

2) 신용보증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에 있어 보증계약자는 채무자 기업 앞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가령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³¹⁾ 보험계약 당사자는 금융기관이며 수출보험(선적 전)을 신청하는 자도 금융기관이다.³²⁾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무보가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또는 수출대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6조 제1호).

- 24) 무역보험공사, 전게서, 32면, 73면.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에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 다이렉트 플러스),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이 있다.
- 25) 기업이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대출, 유가증권·채무증서·채권의 매입 또는 인수 등)을 제공한 후 원리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6조 제2호).
- 26) 무역보험공사, 전게서, 108면.
- 27) 금융기관이 외국인(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금융기관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역보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대출, 유가증권·채무증서·채권의 매입 또는 인수 등)을 제공한 후 원리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6조 제12호).
- 28)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해외투자에 따른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외투자 또는 금융계약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6조 제5호).
- 29) 무역보험공사, 전게서, 111면.
- 30) 무역보험공사, 전게서, 114면.
- 31) 무역보험공사, 전게서, 76면.
- 32) 무역보험공사, 전게서, 77면.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의 당사자이자 보증신청인이 된다.³³⁾

3) 소결

무역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채무자 기업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대출금융기관이 직접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무보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신·기보와 마찬가지로 무보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청구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한다(무역보험법 제5조의2). 보험금을 지급한 무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무역보험법 제5조의3).

3. 신용보강 수단으로서 개인 연대입보

신·기보의 부분보증 및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에 있어 신용보강은 다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부분보증서 또는 부분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서(보험증권)로 담보되지 않는 대출분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신용보강은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한 신·기보 또는 무보가 자신의 보증채무 또는 보험금 지급채무 이행에 따른 채무자 기업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한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보강은 물적담보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채무자 기업의 모회사 등 관계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은 채무자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자(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에게 개인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이 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대출분에 대한 개인 연대입보를 하는 경우 피보증채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부분을 제외한 대출금 채무”가 된다. 반면 보증서(보험증권) 발급기관이 자신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요구하는 개인 연대입보는 “채무자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구상채무”가 피보증채무가 된다.

33) 무역보험공사, 전계서, 88~90면.

Ⅳ.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연대보증 완화 정책

1. 금융당국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정책

1)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경제위기 이후 채무자 파산 등으로 빈발하는 보증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처음에는 보증 금액과 연대보증인 자격을 제한하였다(가령 일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폐지,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으로 연대보증인의 자격 제한)³⁴⁾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무보증을 유도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개인별 보증 한도를 산출하도록 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³⁵⁾ 이후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를 대폭 축소하고³⁶⁾ 개인성 대출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연대보증제도 도입(주채무자의 신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연대보증 요구), 보증 건별 인당 연대보증 금액 제한 등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어왔다.³⁷⁾

34) 금융위원회(1999. 6. 19),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추진”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63281?srchCtgr=&curPage=3&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6.

35) 금융위원회(2004. 4. 22),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66680?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36) 금융위원회(2004. 6. 9),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66744?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37) 금융위원회(2004. 6. 23),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66678?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2)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연대보증 점진적 폐지 및 축소

2012년에는 개인대출에 한하여 추진하였던 연대보증제도 개선 정책을 창업·중소기업 대출에도 확대하였다. 이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이 허용되었다. 동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이루어지는 신규 대출·보증에는 전면 적용하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³⁸⁾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은행권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2만 명,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19.2만 명의 연대보증인이 면제 대상으로 추정되었고, 신·기보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7만 명, 법인기업은 8.7만 명의 연대보증인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⁹⁾ 이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⁴⁰⁾ 기존에 허용하였던 실제경영자, 즉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의 법인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도 은행권과 신·기보 모두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여신의 경우 은행권 및 신·기보 모두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에 한하여만 연대보증이 가능하게 되었다.⁴¹⁾⁴²⁾

- 38) 금융위원회(2012. 2. 14),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0268?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동 제도는 은행연합회의 “기업 여신 연대보증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거쳐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12. 5. 2.부터 전면 시행되었다(금융위원회(2012. 5. 1.)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 5. 2일부터 전면 시행” 보도자료. 다만 은행권의 경우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폐지되었으나 신기보 여신의 경우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였다).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0317?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 39) 금융위원회(2012. 2. 14), “감축대상 연대보증인수”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0227?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 40) 금융위원회(2013. 4. 26),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0679?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 41) 금융위원회(2013. 5. 3),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0684?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동시에 신기보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폐지하였다.
- 42) 다만 이와 같이 연대입보가 허용되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30% 이상 지분 보유자를 무보의 「무역보험 제도안내」에서는 ‘실제경영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연대입보 제도 개선

금융당국의 연대입보 제도 개선 정책은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 한다)으로 법제화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개인인 금융소비자 또는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 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만 개인대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로부터 연대입보를 받거나(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대출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합산한다)의 연대입보는 허용된다(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2. 부분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1) 신·기보 보증 제외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대입보 면제

금융당국은 2014년 1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신·기보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초기 기업이 신·기보 보증서를 활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신·기보 비 보증분(15%)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보증서부 대출시 신·기보 비 보증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정책을 전 은행에 확대하였다.⁴³⁾ 이러한 연대보증 면제 정책은 이후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전면 적용되어 2018년 4월부터는 신·기보, 중진공, 지역 신보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창업 초기 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하여만 은행의 보증서부 대출시 신·기보 비 보증분(1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요한다.

- 43) 금융위원회(2014. 8. 25), “신기보의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전 은행 권으로 확대시행”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1238?srchCtgry=&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하였던 것을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신규 보증 및 대출 취급시 신용등급 및 업력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기업에 대하여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⁴⁵⁾

2) 신·기보의 채무자기업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한 연대입보 요구 완화

이러한 연대입보 완화 내지 폐지 정책은 신·기보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보증에도 적용되었다. 즉,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신·기보, 중진공, 지역신보와 같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하여는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있었던 기대출·보증기업은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보를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재심사 기회 부여).⁴⁶⁾ 이에 따라 신보는 연대보증제도를 개편하여 2017년 8월부터 보증제한기업·선별지원대상기업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투명경영 준수 약정의무 체결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금융관련 제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보증부 대출의 용도외사용 금지 등을 포괄하여 보증대상 기업 앞 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시 연대보증 면제 약정인이 그 즉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⁴⁷⁾ 이를 반영하여 신보의 신용보증규정은 보증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4) 금융위원회(2018. 3. 8), “4.2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3054?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19. 동시에 신·기보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폐지하였다.

45) 노용환(2021.3), “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 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1권 제1호」, 4~6면.

46) 금융위원회, 45번 보도자료, 3면.

47) 장현수(2018),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중소기업금융연구 2018 봄」, 92면.

대보증인을 입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2025. 12.31. 개정 신보의 신용보증규정 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입보시키는 연대보증인은 보증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기업의 경우 입보대상 연대보증인과 책임경영 이행을 의무화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026. 1.22. 개정 신보의 보증운용요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기보도 보증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때 연대보증인은 보증기업과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거나 보증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2025. 5. 7. 개정 기보의 기술보증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기보는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실제경영자 1인에 한하여 입보대상자로 운용하되 실제경영자가 2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입보한다. 다만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면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 7. 20. 개정 기보의 연대보증운용기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기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대입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신·기보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시 연대입보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예외적으로 연대입보를 허용하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의 경우에도 연대입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연대보증 폐지를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한하지 않고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금융당국 기초가 계속되는 한⁴⁹⁾ 중

48) 금융위원회(2019. 4. 24),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3648?srchCtgry=&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20.

소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축소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법률 개정을 통한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1) 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채무조정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회사가 부실화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이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즉,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인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 기업이 면책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2)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신·기보법상 특칙 마련

채무자회생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둔 결과, 중소기업 회생시 연대보증인인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가 어렵고 결국 이는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렵게

49) 금융위원회(2019. 4. 24),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부위원장 모두말씀”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3648?srchCtgr=&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1. 20.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기보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게 되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먼저 신보법은 제30조의3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이 선고되고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 채권자가 신보인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불구하고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규정이다(2013. 5. 28. 법률 제11844호 신보법 개정이유 참조). 기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기보법 제37조의3). 이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2013. 5. 28. 법률 제11843호 기보법 개정이유 참조).

대법원은 신·기보법상 중소기업 재기를 위하여 마련된 보증채무 감면의 특칙은 연대보증을 한 경영자의 회생절차에서도 우선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먼저 개시되고, 이후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신보에 대한 주채무가 감면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를 근거로 신보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었더라도 이는 신보가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신보법 제30조의3이 우선 적용되어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신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즉, 신·기보법의 특칙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결국 원래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V.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과 개인 연대입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기보의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신·기보는 개인 연대입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그러나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1. 금융당국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정책 미대상

금융당국이 2018년 4월부터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신규 보증 및 대출 취급시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⁵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신·기보법상 회생절차에 대한 특칙까지 마련되었다. 그러나 무보는 이러한 연대보증 개선 정책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신·기보, 중진공, 지역신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확장적 해석을 통하여 무보도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지 문제되나, 신·기보법상 회생절차에 대한 특칙이 지역신보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신·기보와 지역신보가 채무자를 위한 보증업무를 제공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기보법상의 특칙이 유추적용 되지는 않으며 이는 입법상 흠결도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50) 노용환(2021. 3), 전계문, 5~6면.

2. 무보의 연대입보 기준

1) 연대입보 관련 무보의 중소기업 우대정책

무보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기타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무보법 제8조의3). 아래 표는 무보의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혁신지원방안 안내」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⁵¹⁾ 이에 따르면 무보는 일정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가능하나 보증한도액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1억 원에서 1.5억 원 이내),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지는 않고 별도로 정한 면제기준 충족시 가능하였으며 시행 기간도 2019. 12. 31.까지로 한 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수출희망기업	- 수출실적 U\$50만 불 이하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최근 3년간 무역보험 이용 여력이 없는 내수 중소중견기업	
	수출초보기업	- 수출실적 U\$100만 불 이하 중소기업 - 수출실적 U\$200만 불 이하 중견기업	
지원내용	수출희망기업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증한도: 1억 원 이내(회전), 1억~1.5억 원 이내(개별)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가능 (면제기준 충족시)
	수출초보기업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중소중견 Plus+)	보험료 할인(20%~30%)

2025년 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성장 플래닛’ 제도를 실시하고 선정된 회원사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⁵²⁾⁵³⁾

51) 무역보험공사(2019. 3. 5),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혁신지원 방안 안내” 공지사항, Retrieved from https://www.ksure.or.kr/rh-kr/bbs/i-412/detail.do?ntt_sn=575928 최종방문일 2026. 1. 20.

52) 무역보험공사(2025. 11. 4), “무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23개 회원사 신규선발”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ksure.or.kr/rh-kr/bbs/i-414/detail.do?ntt_sn=38382. 최종방문일 2026. 1. 20.

2) 무보 연대보증 정책의 특성

무보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정책을 일부 실시하고는 있으나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임의적이라는 점이다. 신·기보 보증서의 경우 금융당국의 일관된 정책에 의하여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무보는 별도 자체 기준을 두고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의 경우에도 ‘면제기준 충족시 면제 가능’이라고 하여 무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었고, 2025년 시행한 플래닛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수출 규모에 따라 연간 수출 U\$1백만 이하는 이머징 스타, U\$3천만 이하는 라이징스타, U\$3천만 이상은 샤이닝스타로 세분화하고 이중 수출자금 지원시 연대보증 입보 면제 등 ‘파격적 혜택’으로 면제제도가 운영된다.⁵⁴⁾ 이와 같이 무보는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및 이용자금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면제 기준도 무보 스스로 정한다.

3) 무보 연대보증 입보기준

무보는 무역보험과 신용보증에 있어 동일한 연대입보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연대입보를 폐지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필수 입보시킨다.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을 입보시키되, 공동대표 및 각자 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입보시킨다.⁵⁵⁾ 무보의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 되는 ‘실제경영자’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i)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감사 포함) 또는 간부사원(주요 부서장, 경리담당 책임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ii) 고용된 자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i) 대표

53) 이투데이, 서병곤 기자(2025. 11. 4),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23곳 신규 선정…수출 중기 맞춤 육성”, Retrieved from <https://www.etoday.co.kr/news/view/2521827>. 최중방문일 2026. 1. 20.

54) 무역보험공사, 53번 보도자료 1~2면.

55) 무보, 전개서, 78면(수출신용보증(선적 전)), 89면(수출신용보증(선적 후)), 95면(수출신용보증(매입)), 99면(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131면(수입보험(금융기관용)), 140면(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155면(환변동보험)).

이사, 무한책임사원, ii) 최대주주(지분을 불문), iii)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에서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⁵⁶⁾ 이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기업의 무보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VI. 신·기보와 무보의 중소기업 연대입보 차이에 따른 실무상 쟁점

신·기보와 무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입보 정책의 차이는 연대보증의 유무에서 그치지 않고 보증 또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구상권 행사 대상 및 위험부담주체의 차이로 귀결된다.

1. 위험부담주체의 차이

신·기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기보는 보증서 발급분만큼 위험을 부담한다. 반면 무보 부분 보험·보증의 경우 무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대입보가 면제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할 수 있다. 무보의 부분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기관도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금융기관과 무보는 연대입보된 만큼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2. 사고 발생시 업무처리방법의 차이

1) 신·기보 부분보증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신보는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으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신보 신용보증약정서 제9조 제1항), 이후 채무자 기업과 연대보증인에게 신보가 이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연대보증인 등에게 실제 상

56) 무보, 전계서, 83면.

환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신보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청구하게 된다(신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기보 역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으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기보 보증약정서 제9조 제1항), 이후 채무자 기업과 연대보증인에게 기보가 이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연대보증인 등에게 실제 상환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기보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청구하게 된다(기보 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이 신·기보는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으면 먼저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하고 난 후 채무자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 면제되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은 제한된다). 즉, 대출 금융기관은 신·기보 앞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신·기보는 동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2) 무보 부분 보험·보증

반면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곧바로 무보 앞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으로 제한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를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⁵⁷⁾

(1)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중장기성 수출보험 중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2020. 1. 29.자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이라 한다)⁵⁸⁾에 의하면 무보는 보험계약자가 금융계약에 따라

57) 이 글에서는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무보의 여러 상품 유형을 모두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연대보증 취급에 있어 무보의 개별 상품별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상품의 약관이나 약정서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8)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무역보험정보통계>보험약관 참조. Retrieved from ksure.or.kr/rh-md/bbs/i-750/detail.do. 최종방문일 2026.1.26.

대출자금을 공여하였으나 비상위험(차입국의 전쟁, 내란 등의 위험) 또는 신용위험(금융계약상대방, 즉 대출차주의 파산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으로 당해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조 및 제3조). 이때 보험가액은 금융계약에 정해진 원리금에서 무보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16조).

① 연대보증인 앞 보증채무 이행청구 후 무보 앞 보험금 청구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상 제3자 지급보증 등 인적담보, 물적담보 등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금융계약상 대출자금의 상환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위험담보장치”라 정의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은 무보가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보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담보권 설정 등 기타 위험담보장치가 있을 경우 이를 무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12조), 손실 확정시 무보 앞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후(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1조 제1항) 통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무보 앞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2조). 이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금융계약상대방의 상환의무가 제3자 지급보증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에는 동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마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2조 제2항).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시 무보와 물적담보 처리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2조 제3항).

② 채권회수 의무와 회수금의 처리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은 보험금 지급을 받은 후에도 금융계약에 따른 원리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기타 유사한 금전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11조 제1항). 금융계약상대방 또는 위험담보장치를 제공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물적담보 등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 금융계약상대방 또는 위험담보장치를 제공한 자의 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모두 “회수금”이 되며(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4조), 동 회수금은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미회수원리금에(이때 이자

를 선충당한다),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원리금(이자 선충당) 등으로 약관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충당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5조).

③ 보험약관의 우선 적용

무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동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상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이를 무보 앞 항변할 수 없다. 즉,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과 금융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무보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 사이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는 금융계약의 내용을 무보 앞 주장할 수 없다’라는 약관의 우선적용을 명시하고 있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33조). 그리고 이 금융계약에는 대출계약, 담보계약 및 이들 계약서와 관련되는 부속계약서들 일체가 포함되고(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무보는 이러한 금융계약상 금융기관이 권리행사를 불행사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또는 금융계약 또는 위험담보장치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거절한다고 하고 있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④ 소결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동 연대보증인은 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상 ‘위험담보장치’에 해당한다. 이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무보 보험약관으로 담보되지 않는 대출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대출금 채무는 결국 무보의 보험이 담보하는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고, 이는 약관상 ‘무보가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계약상 대출자금의 상환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약관에 따라 연대보증인 앞 보증채무를 청구한 후에야 무보 앞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신·기보 보증서 담보의 경우 동 보증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이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1)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가능성

(1) 제3자의 연대보증 금지

금융기관의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 한다)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고(금소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 또는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 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그러나 개인대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로부터 연대입보를 받거나(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대출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합산한다)의 연대입보는 허용된다(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는 연대입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 금지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이때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금지’란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금소법 제20조 제2항,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동 부분보증·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자를 개인 연대입보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특정 대출계약이 금소법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대출의 규모·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보증의 규모·종류,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10304, 「담보대출의 경우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불가능한지」회신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10240,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회신문). 참고로 구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1-3호)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되, 부득이하게 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구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4호).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 및 기존 감독규정의 취지에서 보면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대표 등을 개인 연대입보시키는 것이 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3)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한정 불가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연대입보는 ‘위험담보장치’에 해당하므로(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마친 후에야 보험계약자인 대출 금융기관이 무보 앞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2조 제2항).⁵⁹⁾ 나아가 이러한 위험담보장치를 제공한자인 연대보증인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회수금’에 해당하고(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4조 제1호), 동 회수금은 무보의 보험금 지급 전에는 미회수원리금에 우선충당하고, 보험금 지급 후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미회수원리금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5조 제1항, 제2항). 즉,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금융기관과 연대보증인이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보의 약관조항 우선규정(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33조)에 따라 무보 앞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채무는 대출금 채무 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⁶⁰⁾ 이는 결국 금소법이 금지하는 불공정영

59)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보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물적담보 처리에 대하여 무보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2조 제3항), 물적담보 등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 역시 ‘회수금’에 해당하여 무보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대출금 변제에 충당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24조 제2호, 제25조).

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4. 용어에서 오는 혼선

무보의 부분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무보 보험약관에 따른 회수구조를 잘 알기 어렵다. 통상 금융기관은 신·기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친숙하고,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증사고 발생시 신·기보 앞 부분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한도만큼은 곧바로 신·기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보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후 보험금을 지급하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도 - 대출기관과 연대보증인의 약정에 상관없이 - 전액 무보 담보부 대출금 회수에 충당된다는 점을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야 알 가능성이 높다.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을 금융기관 앞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채무자인 중소기업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이 무보 앞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때 보험가액은 금융계약상 정해진 원리금이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무보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16조). 무보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실액에 약관 제16조에 규정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6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무보가 지급하여야 할 손실액에서 제외된다(해외사업금융보험약관 제5조 제1호). 요약하면 무보는 보험료 산정시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계약상 정해진 원리금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되, 실제 보험금 지급 기준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한다는 말이 된다.

60)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순환논리에 빠져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무보의 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채무가 되는데, 무보는 ‘먼저 연대보증인 앞 보증채무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확정이 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Ⅶ. 중소기업 금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1. 무보 부분 보험·보증과 신·기보의 보증서의 차별적 취급의 필요성

무보는 “보증보험”을, 신·기보는 “보증”을 제공하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기보에 적용되는 연대보증인 면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1) 보증보험과 보증의 유사성

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나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채권담보기능을, 채무자에게는 신용공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증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⁶¹⁾ 보증보험의 본질을 보험으로 이해할 것이냐, 보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논의가 많으나 판례는 ‘보험 형식, 보증 실질’이라고 본다.⁶²⁾ 즉,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판결 등). 또한 판례는 보증보험에도 보증과 동일하게 주채무에의 부종성, 수반성을 인정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따라서 무보는 보증보험임을 이유로 중소기업 금융시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한 취지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61) 차영민(2006. 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8,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1면.

62) 차영민, 전계문, 1면.

2)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과 신·기보 주채무의 유사성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이 무역에 특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기보와 다르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신보법상 신보가 보증하는 주채무는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할 금전채무 등’으로 매우 폭넓게 정의된다(신보법 제2조 제2호, 신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기보 역시 보증대상 주채무가 광범위하다.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할 금전채무, 납세 등의 채무 모두 기보가 보증하는 채무에 포함된다(기보법 제2조 제4호, 기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무보가 수행하는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보증 역시 기보의 부분보증 대상에 속한다. 기보의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수출관련자금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부분보증 비율(85%)보다 높은 90% 부분보증 비율이 적용되고(기보 부분보증 운용기준 제6조 제1호), 수출예상기업, 수출우수기업,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85%의 부분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이외 수출실적기업, 수출주력기업, 수출선정기업에 대하여는 90%의 부분보증비율이 적용된다(기보 부분보증 운용기준 제6조 제11호). 이러한 보증비율 상향 이외에도 기보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을 별도로 두고 보증료율 감면 등의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기보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 제8조).⁶³⁾

3)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과 신·기보 보증의 경제적 기능

이처럼 신·기보의 보증서는 실질적으로 무보의 보증서상 주채무의 차이도 없고, 법적으로도 달리 볼 실익이 낮다. 둘 다 채무자에게는 신용을 보완하게 하는 작용을, 채권자에게는 채권담보로서 작용하므로⁶⁴⁾ 경제적 기능도 사실상 같다.

63) 알리오 공시 기보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 Retrieved from alio.go.kr/item/itemOrganList.do?apbald=C0038&reportFormRootNo=21110. 최종방문일 2026. 1. 22.

64) 정경영(2006. 3),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상사판례연구 6, 편집대표 최기원, 박

2. 제도적 개선 방향

신·기보의 보증서 관련 연대입보 완화 정책이 무보 부분 보험·보증에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관할 감독 당국이 다른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보는 무역보험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의 감독을 받는다. 무역보험의 종류(무보험 제3조), 보험료율의 책정(무보험 제4조), 계약체결 한도(무보험 제8조), 무역보험기금의 운용(무보험 제33조), 기금의 차입(무보험 제34조), 업무방법서의 승인(무보험 제53조의3) 등 무보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감독하는 당국은 산업통상부이다. 반면 신보의 정관변경(신보험 제7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신보험 제11조), 임원의 임명(신보험 제16조), 업무계획의 승인(신보험 제26조 제1항) 등 신보를 관할하는 감독당국은 금융위원회이다. 기보 역시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보험 제17조), 업무 검사(기보험 제47조)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관할 감독당국의 차이가 부분보증에 있어 중소기업 금융 보호를 위한 연대입보 면제 정책의 적용대상이 달라지는 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증서 발급기관 또는 관할 감독 당국의 차이가 중소기업 금융 보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대상 공공기관에 무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무보도 자체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연대입보를 면제하고는 있으나, 이를 무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일관된 정부정책이 펼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기보가 연대보증 폐지 또는 완화 정책에 맞추어 보증 운용요령·연대보증운용기준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보증 약관과 약정서를 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보도 업무방법서나 내부운용기준 및 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서 약정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 무보의 부분 보증·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연대입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험담보장치’로 보아 보증채무 선이행을 요구하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대출금에 무조건 우선충당하도록 한 약관 규정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 의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신·기보의 부분보증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 면제 또는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혁신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⁶⁵⁾ 그런데 신·기보의 부분보증과 법적·경제적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은 무보가 연대입보의 면제 또는 완화기준을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대상 공공기관에 무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한 무보의 내부규정과 약관·약정서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하여 혁신금융을 위한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실현 및 중소기업 금융 보호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 금융위원회(2019. 4. 24),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Retrieved from fsc.go.kr/no010101/73648?srchCtgry=&curPage=2&srchKey=sj&srchText=연대보증&srchBeginDt=&srchEndDt=. 최종방문일 2026. 4. 10.

참고문헌

- 김상환·김흥기(2016.12),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현황과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2-3>」, 한국금융연구원
- 정형권(2009. 8),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5-2>
- 노용환(2021.3), “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 운용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소기업 금융연구 제41권 제1호」
- 정경영(2006. 3),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상사판례연구 6, 편집대표 최기원, 박영사
- 차영민(2006. 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8,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 한국금융연구원(1996. 6), “금융권 동향: 비은행권: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제 확대 실시”, 「주간금융동향 <8-20>
- 무보(2024. 9), 「무역보험제도 안내」
- 금융위원회(1999. 6. 19),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추진” 보도자료
 _____.(2004. 4. 22), “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
 _____.(2004. 6. 9),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 보도자료
 _____.(2004. 6. 23),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
 _____.(2012. 2. 14),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
 원 제도 개선” 보도자료
 _____.(2012. 2. 14), “감축대상 연대보증인수” 보도자료
 _____.(2013. 4. 26),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보도자료
 _____.(2013. 5. 3),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 보
 도자료
 _____.(2014. 8. 25), “신기보의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전
 은행권으로 확대시행” 보도자료
 _____.(2018. 3. 8), “4. 2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보도자료

_____. (2019. 4. 24),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무역보험공사(2025. 11. 4), “무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23개 회원사
신규선발” 보도자료

_____. (2025. 11. 4), “무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에 23개 회원사
신규 선발” 보도자료

이투데이, 서병곤 기자(2025. 11. 4),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23곳 신규 선정…수출 중
기 맞춤 육성” 기사

Abstract

Wh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eek financing, partial guarantees issued by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such as the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re frequently used as collateral for loans. The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relaxed the requirement for personal joint guarantees from SME owners or CEOs and, since 2018, has in principle abolished such guarantees for loans and guarantees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is principle has not been consistently applied to SME loans secured by partial guarantees or insurance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In practice, K-SURE's partial guarantees and insurance perform a function similar to that of guarantee certificates issued by other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in that they serve as credit enhancement for lenders. Given that K-SURE is also a public institution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SME financing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across institutions, the exemption from personal joint guarantees should likewise be extended to loans secured by K-SURE's partial guarantees or insurance.

Furthermore, even when personal guarantees are required only for the portion of a loan not covered by K-S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main necessary. Under K-SURE's policy terms, lenders may demand prior repayment from joint guarantors, and recovered funds must be applied to the loan repayment, which may effectively increase the burden on personal guarantors.

※ **Key words:** partial guarantee, exemption from joint and several personal guarantees, export credit insurance, undue collateral requirements